규제개혁위원회(경찰청)

의안번호	제 2011-322호
의 결 연월일	2011. 9. 29 (제 267 회)

의 결 사 항

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」 심사안

제 출 자	경찰청장 조현오
제출연월일	2011. 9. 29

목 차

□ 규제심사안 개요 ····· 1

□ 규제영향분석서 ····· 3

□ 참고자료 ····· 9

<붙임 1> 제2차 자체 규제심사 결과 ····· 9

<붙임 2> 『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개정안 ····· 12

규 제 심 사 안 개 요

규제사무명	변경(신설) 규제내용
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 단속근거 마련 『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(대통령령 제21676호)	**< 강화(1건) >** ○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 단속근거 마련(시행령 안 제2조 2호) - 키스방, 성인PC방, 인형체험방, 성기구취급업소 등 신변종 풍속업소에서 성매매, 음란물 판매, 도박 등이 행해지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이나 형법을 적용, 단속할 수 있고 - 청소년을 출입·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할 수 있으나 ※ 여성가족부는 고시 제2011-19호(11.4.8), 제2011-30호(11.7.6)로 성기구취급업소, 키스방·성인PC방 등을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로 고시 - 이 업소들이 풍속영업의 일반적 규제법률인 '풍속영업법'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성인들의 업소내 음란행위, 음란물 관람 등은 단속 곤란 ※ 업소 내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형법상 '공연음란죄'로 처벌 불가 -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풍속영업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개정

□ 규제의 필요성

○ 성기구 취급업소 및 키스방 등 각종 음란행위 등을 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신·변종 영업이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

< 신변종 업소 단속실적 >

2010					2011. 1. 1 ~ 8. 30				
총계	키스방	유리방	호스트바	룸카페	총계	키스방	유리방	호스트바	룸카페
30/103	23/60	2/22	4/20	1/1	382/637	296/481	24/33	30/86	32/37

※ 현행 법률상 허가·등록·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현황파악은 곤란하나 단속실적을 비교해 볼때 업소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○ 이들 신변종 업소 대부분은 허가신고 등을 요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이 가능하여 업소내에서 성인들의 음란행위 등에 대해 현행법으로 단속이 곤란하여이들 업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

□ 강화 규제(원안)

○ 키스방, 대딸방 등 신변종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신종·변종 영업의 규제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제2호)

- 여성가족부에서 "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"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영업자가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

□ 자체 규제심사 결과 - 원안동의

규 제 영 향 분 석 서

Ⅰ. 규제영향분석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1. 규제사무명 등</td><td>등록번호</td><td></td><td colspan="8">2. 구분</td></tr>
<tr><td>규제사무명</td><td>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</td><td colspan="8">신설 | | 강화 | ○ | 내용심사 | | 존속기한연장 |
경제적 규제 | | 사회적 규제 | | 행정적 규제 | ○</td></tr>
<tr><td>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</td><td colspan="10">○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
○ 생활안전국장 치안감 김호윤, 생활질서과장 총경 이용표</td></tr>
<tr><td>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10"><table><tr><th colspan="2">유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th>의견수렴방식</th><th>의견내용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피규제자</td><td>성기구 취급업소</td><td>추정불가</td><td>수렴치 않음</td><td></td></tr><tr><td>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사업주</td><td>추정불가</td><td>수렴치 않음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5. 규제존속기한</td><td colspan="10">○ 미설정(사회적 유해성이 제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 필요)</td></tr>
<tr><td>6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규제의 내용</td><td colspan="10">○ 신설규제
-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업소로 결정·고시된 성기구 판매·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규제
-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업소로 결정·고시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내에서의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, 성인용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 등에 대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규제</td></tr>
<tr><td>7. 규제체계도
*별지로 처리 가능</td><td colspan="10">성기구 취급업소 및 키스방 등 신변종 영업 ⇒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 ⇒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상의 규제적용</td></tr>
</table>

II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1. 규제의 필요성

1-1. 문제정의(배경과 원인)

○ 남성용 성기확대·성기단련 기구류 및 성기자극·자위행위 기구류,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을 판매·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와

○ 키스방·대딸방·휴게텔·인형체험방 등 각종 음란행위 등을 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신·변종 영업이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

<신변종 업소 단속실적 비교>

2010					2011. 1. 1 ~ 8. 30				
총계	키스방	유리방	호스트바	룸카페	총계	키스방	유리방	호스트바	룸카페
30/103	23/60	2/22	4/20	1/1	382/637	296/481	24/33	30/86	32/37

※ 현행 법률상 허가·등록·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현황파악은 곤란하나 단속실적을 비교해 볼때 업소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○ 이들 업종들이 대부분 행정관청의 영업허가·신고 등을 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

- 업소내에서 성매매나 도박이 행해지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이나 형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고
- 청소년을 출입·고용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할 수 있으나

※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-19호(11.4.28), 제2011-30호(11.7.6)에 의거 성기구 판매업소와, 키스방 등을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로 결정, 고시

- 신변종업소는 풍속업소의 일반적 규제법률인 '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'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성인들의 음란행위 등은 단속 곤란하여 이들 업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

※ 업소 내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형법상 '공연음란죄'로 처벌 불가

1-2. 규제의 신설 필요성

□ 정책목표

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

○ 성기구 취급업소·키스방 등 신변종 업종의 확산을 방지하여 선량한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근거 마련 필요

□ 정부개입의 필요성

<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>

○ 신변종 업소는 대부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후 음란영업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출입고용 금지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고 있으며

○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현행 법률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나, 음란·퇴폐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할 수가 없어 이들 영업을 풍속영업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함.

<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>

○ 성기구 판매업소 및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 대한 비규제 대안으로는

- 행정지도 등을 통한 자율적 참여 유도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업종의 특성상 자율적 참여 또한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
- 오히려 경찰에서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만 홍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이들 영업을 부추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

○ 선량한 미풍양속 보존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비규제 대안에만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여 비규제 대안은 강화되는 규제와 함께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임.

2.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2-1. 규제대안의 검토

선량한 미풍양속 보존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변종 업종들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며, 적정 규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규제 수준별 대안을 검토

- o 대안① : 현행 제도하에서 행정지도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
- o 대안② : 식품위생법,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신변종 업종을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
- o 대안③ : 신변종업소를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직접 규제하는 방안

□ 대안 검토표

비고	대안1	대안2	대안3
규제의 강도	▪ 규제 변동 없음 (현행 규정) ▪ 정책 목표 달성 기대 곤란	▪ 규제 강도는 적정 ▪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짐	▪ 규제 강도 적정 ▪ 정책 목표 달성 가능
규제의 방식 (포지티브 방식)	▪ 해당없음	▪ 해당없음	▪ 해당없음
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	▪ 생략	▪ 불법영업을 위축시키고 합법영업을 촉진시켜 공정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	▪ 좌동
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	▪ 해당없음	▪ 해당없음	▪ 해당없음
국제무역 및 투자규범과의 상충성	▪ 해당없음	▪ 해당없음	▪ 해당없음
다양한 의무 이행방법 검토	▪ 생략	▪ 해당 없음	▪ 해당 없음
소결	대안 모두 규제로 인한 공정경쟁 및 중소기업활동의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대안1·2의 경우 정책목표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대안3(개정안)을 채택함이 타당		

2-2.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□ 규제의 비용

○ 대통령령 개정을 할 경우에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음

○ 또한 키스방 등 신·변종 업소의 청소년유해업소 결정고시는 일상생활과 합법적인 영업활동의 규제는 전무하며, 동 유해업소에 대해 음란·퇴폐영업에 대해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임

□ 규제에 따른 편익 및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○ 단속법규 미비 등으로 키스방 등 신·변종 유해업소가 확산될 경우

-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신·변종 업소로의 유입 등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

○ 음란·퇴폐영업이 자연스럽게 합법시 되어 선량한 미풍양속이 파괴되고 사회질서 문란이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며

○ 대통령령 개정으로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

○ 오히려, 대다수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편익효과 발생하는 등 우리사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한 정도로 크다 할 것임

3.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

3-1. 규제의 적정성

○ 키스방 등 신·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규정 마련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선량한 사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며

○ 피규제자인 사업자에게 영업손실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들 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지 않아 사회질서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

○ 사업자들의 영업으로 인한 사익보호보다 선량한 미풍양속 보존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 할것이므로 규제로서 적정하다고 생각됨

3-2. 이해관계자 협의

□ **피규제자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: 별도 의견 수렴치 않음**

□ **관계기관 의견 수렴**

○ 기간 : '11. 8. 26 ~ 9. 5

○ 대상 : 행안부, 법무부, 공정위, 문체부, 보건부, 여가부

○ 결과 : 이견 없음

□ **입법예고**

○ 기간 : '11. 9. 7 ~ 27

○ 대상 : 전 국민

○ 결과 : 이견 없음

□ **서식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완료(이견없음)**

3-3. 규제집행의 실효성

○ 기술적·행정적 집행가능성

단속경찰관이 경찰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 기술적·행정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음

<붙임 1>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

2011년 제2차 자체 「규제심사위원회」 개최 결과

1. 일시 및 장소

○ '11. 9. 8(목) ~ 9. 16(금), 각 위원 연구실 등(서면심사)

※ 각 위원 방문, 안건설명 후 서면으로 의견 수렴

2. 참석위원

1. ○ 위 원 장 : 임재연(변호사)
2. ○ 민간위원 : 고태관(변호사), 김선혁(고려대 교수), 박병식(동국대 교수), 이종수(연세대 교수), 정윤수(명지대 교수), 조은경(연구소장), 진형혜(변호사), 임총규(한국과학재단 검사역)

3. 심사 대상 : 1건

연번	법령명	현 행	개 정	비고
1	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 법률 시행령	규제의 근거 없음	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 단속근거마련 (시행령 안 제2조 2호) -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	

4. 종합 심사의견 : 원안 동의

5. 심사안 개요

❑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단속근거 마련
(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)

○ **현행 단속 근거**

- 키스방·성인PC방·인형체험방·성기구취급업소 등 신변종 풍속업소에서 성매매, 음란물 판매, 도박 등이 행해지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이나 형법을 적용
- 청소년을 출입·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

※ 여성가족부는 고시 제2011-19호(11.4.8), 제2011-30호 (11.7.6)로 성기구 취급업소, 키스방·성인PC방 등을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로 고시

○ **개정 내용**

- 이 업소들이 풍속영업의 일반적 규제법률인 '풍속영업법'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성인들의 업소내 음란행위, 음란물 관람 등은 단속 곤란

※ 업소 내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'공연음란죄'로 처벌 불가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풍속영업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개정

6. 안건 주요 의견

○ **진형혜 위원**

- 성기구 판매·대여업소를 당연히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단정하여 키스방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잉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음

부서 설명

▸성기구 판매업소는 판매업소 내에서 음란한 물건을 판매, 대여 등을 할 경우에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위 업소가 풍속업소에 포함이 되더라도 음란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단속이 불가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것 같지는 않음

○ **이종수 위원**

- 해당 업종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가 아닌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음

부서 설명

▸사업자 등록이 아닌 허가등록신고 업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률로 업종을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항임

<붙임 2> 『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개정안

1. 의결주문
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키스방·대딸방·인형체험방 등 신종·변종 영업의 규제근거를 마련하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풍속영업의 허가·등록·신고·휴업·폐업·행정처분 현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찰서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풍속영업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키스방, 대딸방 등 신종·변종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신종·변종 영업의 규제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제2호)

- 여성가족부에서 "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"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영업자가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

나. 지방자치단체에서 풍속영업 허가 등의 현황을 경찰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).

- 지방자치단체의 풍속영업 허가·등록·신고·휴업·폐업·행정처분 현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9조를 신설함으로써 풍속영업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

라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1. . ~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

4) 이 개정안 중 **"진하게 표시한 부분"**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,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.

대통령령 제　　호
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**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**"을 "**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**"으로 한다.

제1조부터 제3조까지,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풍속영업의 범위)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법 제2조제5호에서 "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.

2. **법 제2조제7호에서 "그 밖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(6)에 따른 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.**

제3조(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)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"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·사용인 기타의 종업원(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·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제7조(풍속영업의 통보)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조제2항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를 말하며,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1.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
2. 영업정지
3. 시설개수명령

제8조(위반사항의 통보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,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·영업정지·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제9조(정보통신망의 이용) 제7조제1항·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통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	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조(목적)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풍속영업의 범위)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1. 법 제2조제1호에서 "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라 함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.	제2조(풍속영업의 범위)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1. 법 제2조제5호에서 "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.
2. 법 제2조제2호에서 "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.	2. <삭 제>

2. <신 설>	2. 법 제2조제7호에서 "그 밖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(6)에 따른 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.
제3조(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) 법 제3조본문·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"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·사용인 기타의 종업원(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·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	제3조(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)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"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·사용인 기타의 종업원(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·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제7조(풍속영업의 통보)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, 해당 풍속영업소가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	제7조(풍속영업의 통보)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②법 제4조제2항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를 말하며,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1.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. 영업정지 3. 시설개수명령	② 법 제4조제2항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를 말하며,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1.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. 영업정지 3. 시설개수명령
제8조(위반사항의 통보)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,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·영업정지·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	제8조(위반사항의 통보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,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·영업정지·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<신 설>	**제9조(정보통신망의 이용) 제7조제1항·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통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**

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1. . .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풍속영업 허가(인가 등록 신고) 통보

1. 관련근거 :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

2. 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풍속영업 허가(인가 등록 신고)현황을 통보합니다.

풍속영업자 (법인인경우에는 그 대표자)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(전화번호 :)		
풍속영업소	명 칭			
	소재지			
	규 모			
	주 소	(전화번호 :)		
영업의 종별				
허가(인가·등록·신고) 번호		허가(인가·등록·신고)일자		
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업소여부	[ ] 해당 [ ] 해당없음			

붙임 : 업소 평면도 1부.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 전송( 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1. . .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풍속영업소 휴업·폐업·영업변경 통보

1. 관련근거 :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

2. 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풍속영업소 휴업·폐업·영업변경 현황을 통보합니다.

풍속영업소	업소명			
	업주명			
	업 종			
	소재지	(전화번호 :)		
허가(인가·등록·신고) 번호			허가(인가·등록·신고)일자	
휴업·폐업 및 영업변경사항	업소 평면도 1부			

붙임 : 필요 증거서류(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).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 전송( 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1. . .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

1. 관련근거 :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
2. 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풍속영업소 위반사항을 통보합니다.

풍속영업소	업소명			
	업주명			
	업 종			
	소재지	(전화번호 :)		
허가(인가·등록·신고) 번호			허가(인가·등록·신고)일자	
위반사항				

붙임 : 필요 증거서류(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).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 전송( 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1. . .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풍속영업소 행정처분 결과통보

1. 관련근거 :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
2. 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풍속영업소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합니다.

풍속영업소	업소명		
	업주명		
	업 종		
	소재지	(전화번호 :)	
허가(인가·등록·신고) 번호		허가(인가·등록·신고)일자	
위반사항		행정처분 기간	
행정처분내용			

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 전송( 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